

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·지원 제도 운영 안내문

○ (운영근거) 「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

* 공익제보 신고대상

- ①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의 부패행위
- ②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상의 공익침해행위
- ③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
- ④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을 위반하는 행위
- ⑤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청구등 행위
- ⑥ 「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」 위반 행위
- ⑦ 불법찬조금 조성 및 집행 (지침에 추가)

○ 공익제보자와 협조자의 신분 비밀 보장 및 불이익조치(집단따돌림, 폭행 등) 금지
- 신분상·인사상·경제적 불이익과 정신적·신체적손상 등의 불이익조치 금지

○ 신분노출 우려 시, 변호사 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, 익명신고 가능
- 공익제보는 실명이 원칙이나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의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(교육청이 비용부담), 익명신고 가능(익명의 경우, 처리결과를 답변하지 않음)

○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의 제보자 보호·지원사항

-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,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, 치료비, 변호사 소송비용 등의 구조금 지원
- 제보자가 교육감 소속 교직원이며 본인의 제보로 인하여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,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(제보자가 국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, 인사권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권고)
- 보상금·포상금 지급,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 지정 및 지원(조달계약 체결 시 우대 가능), 교육감 표창 등

○ 보상금, 포상금 지급

(보상금)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(본인이 직접 신청)

(포상금)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 (기관 추천)

- 지급절차 : 공익제보위원회 심의·의결 후 지급
- 지급기준 : 내부 세부지급기준에 의함 (보상금 30억 이내, 포상금 2억 이내)

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goe.go.kr>)>전자민원>신고센터>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접수하시거나 공익제보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, 031-820-099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